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률명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조례에서 인용 및 적용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지식산업센터 건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주된 업무로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을 “주된 임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라 함은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을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로, “아파트형 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을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중소기업의”를 “시장은 중소기업의”로하고,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기업”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융자신청)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차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차보조금교부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9조제2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로,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를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로,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기업”으로 하며, 같은 항 1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소프트웨어 진흥구역내의”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내의”로 한다.

제18조 중 “중소기업진흥과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3규정에 의거 관내의”를 “관내의”로 한다.

제20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3조 및 중소기업의구조개선 및경영안전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u>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 라 한다)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중소기업자” 라 함은 <u>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u> 를 말한다.	1. ----- 「중소기업기본법」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시설자금” (이하 “시설자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화·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 공장 건설·시장재개발·시장시설 개선·공동창고설치·점포시설개선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 산업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4. (생 략)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하 “창업투자회사” 라 한다)라 함은 창업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 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3. -----

-----지식산업
센터 건설-----

-----.

4. (현행과 같음)

5. -----

-----주된 임무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
업 지원법」 제10조-----

-----.

6.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자” 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2-----
-----지식산업
센터를 -----.

7.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건축법·주택건설촉진법·도시재개발법 등 관계규정에 의해 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증·개축하거나 재개발·재건축기간 중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 11. (생략)

12. “벤처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을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3. (생략)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융자대상) ①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

7. -----
--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8. ~ 11. (현행과 같음)

12. -----
「중소기업기본법」-----

-----.

13.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중소기업의-----
-----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

제10조(융자대상) ①-----

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
합한 자로 한다.

1. ~ 4. (생략)

5.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
업자

6. (생략)

② (생략)

제11조(융자신청)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제14조(이차보전 절차) ①융자 추
천에 의한 매회의 이차보조기간
은 2년 이내로 하고, 이차보전
은 5%이하로 하며 보조금은 융
자를 추천받은 기업체에서 협조
은행에 융자를 받은 즉시 구미
시장에게 제출한 이차보조금교
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가동조사를 개별로 실시하
여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
산 지급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5.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기업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융자신청)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이차보전 절차) ①-----

-----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차보조금교부신청서-

-----.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실시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용자대상) ①시설자금의
용자대상자는 시 관할지역내에
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한 자로 한다.

1. · 2. (생략)

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
은 아파트형 공장건설사업자
(공공기관을 우선한다) 또는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4. ~ 9. (생략)

10.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
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
기업자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
치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벤
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
업집적시설설치 사업자로 지
정받은자 및 소프트웨어개발

②-----
----- 별지 제3호 서식 --
-----.

제15조(용자대상)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

4. ~ 9. (현행과 같음)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소기업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 「소프트웨어

촉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정받은 소프트웨어 진흥구
역내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사업자로 계약체결된 비
영리 법인

12. · 13. (생략)

② (생략)

제18조(지원대상) 시장은 중소기
업의 현장기술애로해결과 정보
화·기술개발사업 추진에 관하
여 중소기업진흥과구매촉진에
관한법률 제5조의3규정에 의거
관내의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
하고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본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업무의위탁) 시장은 중소
기업의 경영안정과 자동화·정
보화·기술개발사업등 추진에
관한 전문 기술지도와 자금지원
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
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나 중소기업육성에 관련되는
법인·단체등에 운전자금 및 시
설자금의 용자대상선정 등 용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 진흥법」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내의 -----

12. ·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원대상) -----

-- 관내의-----

-----.

제20조(업무의위탁)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육성계획의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11.8, 2010.3.31>

1.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설치 또는 동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유예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4. 12)

1. ~ 12. (생략)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인·허가등의 의제, 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처리기준의 고시등, 설립등의 승인취

소, 건축허가, 사용승인, 제도시설설치승인, 제도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4.12>

②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건축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12>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를 받으면 지식산업센터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전문개정 2009.2.6][제목개정 2010.4.1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 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12.30>

1. 창업자에 대한 투자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의2.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

4. 해외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인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 해외투자

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 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6조(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구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진흥단지의 지정요건 기타 지정 및 조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중소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정부 등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⑧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25조(산학연협력사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연구·개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